<특별인터뷰> 권 석 창 국회의원

대담 : 권계주 대종원부총재

左로부터 권계주 부총재 권영수 제천종친회부회장 권석창 국회의원 권희필 부총재 권오운 사무총장.

左 권계주 부총재 右 권석창국회의원(제천단양).

문1. 요즘 의원님께서는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특히 우리 종친여러분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며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천, 단양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돌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과 신성장동력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2. 의원께서는 정치에 꿈을 언제부터 가지셨습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발전에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고향인 제천, 단양을 발전시키고 싶었고, 우리 지역에 안좋은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에 꿈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문3. 공직자출신으로서 의회에 입성하게 된 소감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종친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토부에 있으면서 쌓은 전문성이 지역여러분께 큰 장점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문4. 비교적 젊은 세대로서 의무감 및 사명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 중에선 젊은 축에 끼기 때문에 젊음과 초선의 신선함으로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5. 국토부및 국가발전 행정관의 오랜 경험을 통해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의정활동계획과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 오랜 근무를 하고 특히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경험하며 한국의 자동차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안하는 가전제품을 사도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이 되는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가 결함이 있더라도 교환·환불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문6. 선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치다보니 온갖 음해와 유언비어가 넘쳤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을 지역여러분이 알아보시고 저를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7. 의원님의 가족소개와 함께 특별히 건강관리 비결이 있으면 소개부탁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정정하셔서 항상 저흴 챙겨주시는 어머님과 같이 서울대를 나온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비결은 특별한 것 없이 주변에서 챙겨주는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8.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우리 종친회가 계속 서로 챙겨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도 잘되고 연락도 자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9. 끝으로 전국의 권문가족들에게 종친회의 일원으로서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여러분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실망스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종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달 교수 중국문화원 초청 강연 성황리 진행

〈중앙대 명예교수〉

본원 부총재이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중달박사가 주한중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아 2016년 4월 5일부터 6월7일까지 매주 1회씩 "자치통감을 통한 중국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10회에 걸쳐서 성황리에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통감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권교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연에는 교수, 변호사, 작가, PD를 비롯하여 대학원생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120~130명씩 자유롭게 참석하여 청강하고 있다.

매회 강연 시에는 중국문화원 강당의 좌석이 부족하여 보조좌석을 20석 이상 더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강연의 내용은 중국문화원 측에서 중국인들에게도 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사람이 강연하는 중국문화를 중국인들이 듣도록 준비 중에 있다.

권교수는 이 강연에서 중국의 정치, 문화, 제도, 사상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강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와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에 국한하지 않는 세계문화의 형성 방향까지 토의하고 있다.

권교수가 이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100배가 넘는 넓은 영역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2천년이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에 대하여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폭은 크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는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한중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6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

취안순지(權順基)회장.

左로부터 취안순지집행회장, 위하이엔 중수석대표, 담도굉현대자동차중국부사장, 류시보화웨이그룹 한국대표, 한뢰샹 중국공상은행, 서울분행장,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지영모 이사장, 문종훈SK네트웍스 대표이사, 이방수LG디스플레이 부사장, 황매영 알리바바그룹 한국총경리.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 주한대표부(수석대표 위하이엔)와 한중일경제발전협회(집행회장 취안순지),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사장 지영모)이 공동 개최한 2016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관계자와 300여개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FTA와 산업협력추진"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CCPIT북경분회, 한중문화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개막식, 경제관련 기관연설, 대표기업 전문가연설, 한중경제협력대상 시상식, 디너 및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통산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시, 코트라 등이 후원했다.

특히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위하이엔 CCPIT 주한대표부 수석대표와 취안순지 한중일경베발전협회 집행회장의 인사말, 지영모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의 환영사, 이관선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의 격려사, 이수성 전 국무총리, 린수샹 전 산동성 부성장, 오신환 국회의원,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장수 주중한국대사가 영상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중경제협력대상은 한국과 중국 경제교류의 양적 기여도와 기술혁신성, 사회문화적 공헌도 등이 평가항목으로 한국측(현대자동차그룹,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네트웍스)과 중국측(중국공상은행, 화웨이그룹, 알리바바그룹, 캉더그룹) 각각 4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중포럼 사무국(02-3461-7888)**

지난 4월 21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2016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FTA와 산업협력 추진"이란 주제의 이행사에는 이광선 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수성 전 국무총리, 오신환 국회의원,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린수샹 전 산동성 부성장등 한국과 중국 정부관계자, 300여개의 중견기업 종사자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 포럼의 실무책임은 한중일 경제발전협회가 맡았는데 이 협회의 집행회장이 바로 재중동포 2세인 권순기 족친(57)이다.

중국베이징의 정,재계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당발이다.

이 협회는 중국외교부의 직속기관, 중국각부의 국가부주석급 5명을 명예주석으로, 외교부,상무부,법무부 장관5명을 명예회장으로 각성의 성장과 서기등 50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막강한 인맥이 뒤를 든든히 떠 받치고 있는것이다.

권회장은 이 협회말고도 중국공상연합회 부주석과 공동으로 중한기업연의회, 중일기업연의회회장도 맡아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와 각성의 고위인맥을 바탕으로 베이징상립대유한공사(北京上立大有限公司)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상립대(上立大)란 높이세우고 크게 듣는다라는 뜻과같이 권회장이 이끄는 유한공사는 컨설팅업체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문제해결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발전하고 우호협력하는데 디딤돌역할을 하고싶다는 포부이다.

권회장은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중국진출을 견인했고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廣州)시에 40억달러를 투자할 때 중계했으며, LS그룹의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공장설립을 지원했다.

또 삼성이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발 벗고 나서 해결했고 SK가 산시(陝西)성이 국영기업과 합작하다 서로 갈라지며 생기는 여러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줬다.

현대조선소의 칭다오(靑島)유치를 주선하고, 대우시멘트의 산동(山東)성 투자도 끌어냈다. 기업만 아니라 한국병원의 중국설립, 대학간의 교류도 성사시켰다. 지금까지 거래한 회사만 100여개, 현재는 30여회사와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주요도시와 서울 대만 홍콩 일본 등지에 분회를 두고있다.

권회장은 경기도 양평출신의 부친과 이북출신 모친슬하에서 지린(吉林)성에서 태어나 고교졸업후 군에 입대, 제대후 공안(경찰)에 들어가 많은 사람과 만났다.

그 후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산하 기계공장의 총경리, 호텔사장등으로 일하다 1990년 베이징에 소수민족을 다루는 민족사무위원회에서 그의 능력을 보고 스카우트했다.

민족경제 발전총공사 부총리로 근무하다가 1996년 베이징상립대 투자고문유한회사를 창업했다.

권회장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중국정부가 할 일을 민간차원에서 돕는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고있다.

그는 한중FTA시대에 즈음하여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안전한 먹거리에 중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상승에 è추어 이분야에 관심과 집중할것을 강조하고있다.

〈홍보부 편집〉

● **노동법 이야기 ②**

취업규칙에 대하여

권 오 일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복야공파 35세)

1.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정이나 사규 등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준수, 작성. 신고, 작성 및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게시. 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1953년5월23일의 제정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제도와 작성. 변경 때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 취업규칙의 역할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규범으로는 단체협약이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법령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집단적 규범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헌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3.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미만에 해당되지만 사업전체로는 10명이상일 때, 사업전체의 자격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점.공장 등의 근로자가 10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사와 지점. 영업소. 공장 등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면 본사에서만 신고하면 된다.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경우 본사나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속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신고의무를 충족한 것이 된다.

4.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으로 13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기재내용으로는 ①업무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 ②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③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 ④퇴직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⑥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 ⑦교육시설 ⑧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 ⑨안전과 보건 ⑨의2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조건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⑩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⑪표창과 제재⑫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재의무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작성.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칙을 받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5. 취업규칙 신고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심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작성된 취업규칙 전부,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의 의견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법령, 단체협약에 위반되면 심사종료후 3일이내에 변경명령을 한다. 심사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변경. 보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하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조건에 따른다.

6.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성 또는 변경한 날이 효력발생 시기가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은 시점이 된다.

7. 마무리

앞에서도 기술한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에 관한한 개별기업의 최상위 규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별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채용. 전보.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 임금 . 퇴직금.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